

## 대학원 국제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시행세칙

[시행 2023.4.1.]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개강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1.>

**제2조(명칭)** 본 과정은 국제최고경영자과정(이하 "과정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운영)** ① 본 과정은 대학원 석사과정과는 별도로 개설하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.

② 대학원장은 본 과정에 대한 교학·회계, 기타 운영전반을 관장한다.

③ 국제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④ 국제최고경영자과정 수업진행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. 주임교수에게는 소정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7.9.1.]

**제4조(수강기간)** 과정의 수강기간은 1년 단위로 운영하며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
### 제2장 입학, 등록, 수강 및 수료

**제5조(입학정원)** 과정의 입학정원은 70명 내외로 한다.

**제6조(지원자격)**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업체의 관리자와 자유업종사자
2.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
3.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및 대령급 이상의 군인
4. 주요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임원
5. 기타 본 과정의 수강능력이 인정되는 자

**제7조(지원서류)**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입학지원서(소정양식)
2. 재직증명서(직위가 명시된 것)
3. 사업자등록증사본(해당자에 한함)
4. 그 밖의 참고자료

**제8조(전형방법)** 과정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.

**제9조(등록 및 장학혜택)** ① 과정의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입학생 중 본 과정의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23.4.1.]

**제10조(수료)** ① 본 과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강한 자에게는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.

② 과정의 수료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9.1.]

**제11조(출강교수)** 과정의 출강교수는 동명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과 외부강사로 한다.

**제12조(기타)**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7.9.1.>

### 부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경과조치)** 이 시행세칙 이전 2012년 3월 동명대학교 국제최고위과정에 등록한 수강생에게도 본 시행세칙을 적용한다.

**부칙**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최제 000 호

## 수 료 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      년    월    일

위 사람은 「동명대학교 대학원 학칙」 제3조 따라 개설된  
국제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   월    일

동명대학교 대학원장 ○○박사    ○ ○ ○

위의 인정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   월    일

동명대학교 총 장 ○○박사    ○ ○ ○